

##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
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예방을 위해 관내 아래장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13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

1. 금지장소: “의사당대로, 은행로, 국회대로, 여의공원로, 당산로” 일부(인도 포함)  
※상세위치도 5항 참조

2. 고시근거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2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3. 적용기간: 2020. 3. 14.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

4. 금지내용: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·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

5. 금지장소 위치



6. 벌칙조항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7.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된 자

7. 시행일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